

#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6. 3. .

발 의 자 : 오승철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하여, 중간층 슬래브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수·방근계획 반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,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건축물 내구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 관련 기준 신설(안 제3조제4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하여, 중간층 슬래브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수·방근계획 반영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,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건축물 내구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## <참고>

### 타지자체 사례

#### 수원시 주택 조례 [시행 2025.04.09]

제5조(주차장 계획)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7. 지하 주차장 천장 슬래브,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,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·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01.07) (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.04.09.)

#### 광명시 주택 조례 [시행 2025.12.19]

제4조(주차장 계획)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5.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·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,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.〔본조신설 2025. 12. 19〕